

기초생활수급자 급여-재산장제급여(국비)

1 기본 현황

□ 사업개요

사업기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										
사업위치	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(희망복지지원과)										
총사업비	<table style="width: 100%; border: none;"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총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(국비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(사비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(보조율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(구비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3,710,436천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2,435,234천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1,275,202천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65.6 %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	총	(국비)	(사비)	(보조율)	(구비)	3,710,436천원	2,435,234천원	1,275,202천원	65.6 %	
총	(국비)	(사비)	(보조율)	(구비)							
3,710,436천원	2,435,234천원	1,275,202천원	65.6 %								
사업내용	○ 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(출산예정 포함) 및 사망한 경우 해산 및 장제급여 각각 지원										
사업형태	<input type="checkbox"/> 직접수행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자치단체 보조 <input type="checkbox"/> 민간이전 <input type="checkbox"/> 출연출자 <input type="checkbox"/> 민간위탁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										
사업시행주체	보건복지부, 서울시, 자치구										

□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

신규	계속	투자심사	학술용역	기술심사	자랑보조심의	정보화심사	공유재산	안전예산	출자·출연
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경상	투자								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							

□ 지역보조사업 형태 및 법령근거

지원형태	법령근거	보조금심의회 결과
사업보조	국민기초생활보장법	적정
운영비보조	해당 없음	

□ 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복지본부	희망복지지원과	김철수 2133-7370	유규용 2133-7397	김현숙 2133-7391

2 예산 설명

□ 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분	2015년 예산액	2016예산액 (A)	2017예산(B)	증감 (B-A)	(B-A)*100/A
계	(x-)	(x2,518,540) 3,818,104	(x2,435,234) 3,710,436	(x△83,306) △107,668	(x△3) △2
사회보장적수혜 금	(x-)	(x232,960) 465,920	(x260,174) 520,348	(x27,214) 54,428	(x11) 11
자치단체경상보 조금	(x-)	(x2,285,580) 3,352,184	(x2,175,060) 3,190,088	(x△110,520) △162,096	(x△4) △4

□ 예산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

과목구분	세부 산출내역
사회보장적수혜금	○ 시설수급자 해산장제급여 520,348,000원 = 520,348천원
자치단체경상보조금	○ 일반수급자 해산장제급여 3,190,088,000원 = 3,190,088천원

3 사업 설명

□ 사업목적

- 기초수급자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보호와 조치
- 기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·운반·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

□ 사업근거

- 법령상 근거
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

□ 사업내용

- 지원대상 : 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 163,146가구 235,937명('16. 11월)
- 사업기간 : 2017. 1월 ~ 12월
- 사업내용
 - 해산급여 :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
 - 장제급여 : 사체의 검안, 운반,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

- 총사업비 : 3,710,436천원(국비 2,435,234천원, 시비 1,275,202천원)
- 재원분담비율 : 일반(국비 60%, 시비28%, 구비12%), 시설(국비50%, 시비50%)

□ **추진경위**

- 1961년 생활보장법 제정, 생계보호 실시
 - 1982년 교육보호와 자활보호 추가 실시
 - 1987년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선 읍,면,동에 배치 시작
-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('99.09.07)(생활보장법 대체)
 -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첫 시행, 주거급여 별도 규정
-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('14.12.30)
 - 2015년 7월 1일 맞춤형급여 첫 시행(중위소득 도입, 급여별 선정기준 다층화)

□ **중점추진사항(사업추진의 필요성)**

-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편 내용(맞춤형급여체계)
 - 급여체계 : 개별급여
 - 선정기준 : 중위소득
 - 급여별 선정기준 다층화
 - ▷ 생계급여 : 기준중위소득의 30%, 의료급여 : 기준중위소득의 40%
 - ▷ 주거급여 : 기준중위소득의 43%, 교육급여 : 기준중위소득의 50%
 -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
 - ▷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양능력 판정기준 및 부양비 부과 기준 완화
 - ▷ 부양의무자 가구원 중 중증장애인 수만큼 가구원 수에 합산
 - ▷ 교육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

□ **사업추진절차**

- 집행절차
 - 예산편성-자치구별 보조금 확정내시(시)-매월 보조금 신청(구)-매월 보조금 교부(시)-보조금 집행(구)-보조금 정산 보고(시)

□ **2017년도 추진일정**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3,710,436	
보조금 집행 및 정산	2017.01~2017.12	3,710,436	자치구별 월별 보조금 신청에 따른 보조금 교부 및 정산

4 사업 효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2014년도	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29,895가구 207,736명 ○ 예산 집행 3,323,307천원(예산액 3,331,617천원, 집행률 99.8%)('14. 12월)
2015년도	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63,107가구 259,446명('15. 12월) ○ 예산 집행 3,358,898천원(예산액 3,358,898천원, 집행률 100%)('15. 12월)
2016년도	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74,927가구 270,852명('16. 11월) ○ 예산 집행 3,702,260천원(예산액 3,818,104천원, 집행률 97%)('16. 12월)

□ 향후 기대효과

- 선정기준이 다층화되어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도움은 계속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

5 최근 3년 결산 현황